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573

발의연월일: 2025. 4. 3.

발 의 자: 박성훈·김형동·고동진

안상훈 • 이인선 • 박충권

김성원 · 이상휘 · 이헌승

김기웅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금을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장례 등 서비스를 공급 받는 선불식 할부거래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선불식 할부거래 업자에게 계약 시 소비자에 대한 설명의무,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보 험계약 체결의무 등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선불식 할부거래의 경우 소비자의 선수금 납입과 서비스 제공 사이에 시차가 존재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으므로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하여금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관한 기록을 보존 및 열람 제공하도록 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공제조합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불식 할부거래에서 소비자의 권익

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2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 제목 중 "열람"을 "보존 및 열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화등"을 "재화등"으로, "체결내용을 언제든지 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를 "체결내용 및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관한 기록 등(이하 "거래기록등"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다.

- 이 경우 보존기간 동안 언제든지 소비자가 해당 거래기록등을 쉽게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보존하는 거래기록등의 대상·범위 및 보존·열람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제2항제10호 중 "소비자의 열람에 제공하는 재화등의 거래기록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내용"을 "보존 및 열람 대상에 해 당하는 거래기록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9호의3 및 제9호의4 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재화등의 거래기록·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내용을"을 "거래기록등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로 한다.

9의3. 제31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조치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자

9의4. 제31조제3항에 따른 징계·해임 요구 또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관한 기록의 보존 및 열람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3조(거래기록 등의 <u>열람</u>) 선불	제33조(거래기록 등의 <u>보존 및</u>
식 할부거래업자는 <u>대통령령으</u>	열람) ①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화등의	<u></u> 재화등
거래기록・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등의 <u>체결내용을 언제든지</u>	체결내용 및 선불식 할부계약
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	의 해제에 관한 기록 등(이하
<u>야 한다</u> . <후단 신설>	"거래기록등"이라 한다)을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
	<u>존하여야 한다</u> . <u>이 경우 보존기</u>
	간 동안 언제든지 소비자가 해
	당 거래기록등을 쉽게 열람할
	<u>수 있게 하여야 한다.</u>
<u> <신 설></u>	② 제1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
	거래업자가 보존하는 거래기록
	등의 대상ㆍ범위 및 보존ㆍ열
	람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과태료) ① (생 략)	제53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2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O (처체코 가이)
1. ~ 9. (생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제33조에 따른 <u>소비자의 열</u>	10 <u>보존 및 열</u>

람에 제공하는 재화등의 거래 기록·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 약등의 체결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한 자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9의2. (생 략) <u><신 설></u>

<u><신 설></u>

- 10. (생략)
- 11. 제33조에 따른 <u>재화등의 거</u> <u>래기록·소비자피해보상보험</u> <u>계약등의 체결내용을</u> 소비자 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지 아 니한 자

12. ~ 14. (생략)

④ ~ ⑧ (생 략)

람 대상에 해당하는 거래기록
<u> </u>
③
1. ~ 9의2. (현행과 같음)
9의3. 제31조제2항에 따른 시정
명령 또는 조치 요구를 따르
지 아니한 자
9의4. 제31조제3항에 따른 징계
•해임 요구 또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10. (현행과 같음)
11 <u>거래기록등</u>
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12. ~ 14. (현행과 같음)

④ ~ ⑧ (현행과 같음)